

공유재산(시유지) 무단점유자에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

인천광역시 공유재산(시유지)을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 경작과 농기구창고 등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공유재산(시유지)을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. 이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과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11.12.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

1. 처분내용 : 인천광역시 공유재산(시유지)의 원상복구명령 등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3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용 비닐하우스, 농기구창고 등 시설물 자진철거(원상복구명령)
나.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실시
2. 법적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
3. 처분원인 : 인천광역시 공유재산(시유지) 무단점유
4. 처분대상 및 위반장소

소재지	무단점유자	점유내용	점유면적	발생년도
송도동 11-3,7 28-2,3,4,5,6 부근	성명, 주소 미상	무단경작과 시설물 설치	약 437,000㎡	미상

5. 공고기간 : 2019. 11. 11.~2019. 11. 30.
6. 공고 및 게시장소 : 인천광역시(인천경제자유구역청)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
7. 공고내용
가. 무단 경작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2019. 11. 30.까지 농작물과 시설물 등을 자진철거하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합니다.
나. 행정대집행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우리 청 또는 제삼자가 대집행하며 그 비용은 무단점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.

다.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와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유의사항

가. 농작물과 시설물 등을 2019. 11. 30.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점유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우리 청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하며,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
나.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다.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(☎ 32-453-7143)

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. 끝.

붙임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송도동 28-2 부근

위 치 도	
현 장 사 진	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송도동 11-3,7 부근

위
치
도



현
장
사
진

